법제처	**보도자료**	보다 나은 정부	한국판뉴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배포일시	2021. 7. 14.(수) / 총 2장 ※ 붙임 별도
담당자	과 장 양혜원 사무관 남수진 (044) 200-6793		

법제처,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등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4일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1년 2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76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

* 법제처가 기초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 선정된 사례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지침의 마련, 이용실태조사, 안전교육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조례로 규범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이강섭 처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 "법제처는 이와 같은 조례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 사례(4건)

붙임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선

< 2021년 2분기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

① 「○○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안전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지침의 마련, 이용실태조사, 안전교육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뒷받침하는 자치규범의 제정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컨설팅의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상당부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정현 전문위원**)

② 「○○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복지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의 실시 등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시에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을 조례로 규범화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음(**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영 정책전문위원**)

③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지방재정법」 중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지방보조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조례를 개정해야 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정현 전문위원**)

④ 「○○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산업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초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의 상황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됨(**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승모 수석전문위원**)